

의안번호	2213869
의 퇴 인	이정헌의원
회 답 일	2026.1.8.
추계번호	25D58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의3(친밀한 관계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밀한 관계 또는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 가해자와 분리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 - 관계 회복 또는 관계 종료를 위한 전문 상담 - 그 밖에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은 친밀한 관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친밀한 관계 성폭력 전담 인력을 배치하거나 전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제2항)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3조의3(친밀한 관계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친밀한 관계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안 제23조의3)
 - 개정안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 －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
 - － 관계 회복 또는 관계 종료를 위한 전문 상담
 - － 그 밖에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개정안 제2항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거나 전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개정안에 따른 특별 지원의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유형, 피해자의 수, 전담 인력의 신규 채용 규모, 주거 지원 비용, 전문 상담 비용 등의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시점에서 이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참고로, 연도별 교제폭력 형사입건 건수는 다음과 같음

[표 1] 교제폭력 형사입건 건수: 2020~2023년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가율
교제폭력 형사입건건수	8,951	10,538	12,828	13,939	15.9%

자료: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 또한,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 경험은 유형별로 다음과 같음

[표 2] 여성폭력 유형별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 경험: 2024년

(단위: 명, %)

구분	친밀한 파트너 폭력	
	사례수	비율
신체적 폭력	739	54.1
성적 폭력	446	32.7
정서적 폭력	775	56.7
경제적 폭력	145	10.6
통제	317	23.2
스토킹	93	6.8
전체	1,366	—

자료: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190p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

